

부산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가단3363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현완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22. 6. 8.자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배당된 100,305,479원의 배당금출금 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

(1) 기술보증기금은 2013. 6. 14. (주)E(이하 'E'이라고 한다)와 보증금액 3,740만원의 신용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당시 위 회사의 대표자인 A(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은 위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E은 그 무렵 F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1대출금'이라 한다).

나. 대출계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6. 3. 8. (주)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억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대출금'이라 한다), 당시 위 회사의 대표자인 채무자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채무자의 처분행위

(1) 채무자는 2017. 4. 6.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을 설정해 주었다.

(2) 채무자는 2020. 10. 6. 피고에게 당시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그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기술보증기금의 대출원리금 채권

(1) E이 2020. 10. 15. 이 사건 1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보증사고를 야기하자, F은행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2) 기술보증기금은 2021. 4. 6. F은행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8,413,5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기술보증기금이 위 대위변제금 중 91,280원을 회수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은 38,837,485원[대위변제금 잔액 38,322,282원 + 지연손해금 226,783원(= 38,322,282원 × 2021. 5. 3.까지 27일/365 × 약정이율 8%) + 대지급금 288,4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38,322,282원에 대한 2021. 5. 4. 이후의 연 8%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았다.

마. 각 가압류 및 압류

-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0. 11. 23. 이 사건 2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청구금액 82,306,107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카단11509)하였는데, 2021. 6. 23. 현재 위 2대출원리금은 85,369,649원이 남았다.
- (2) 중소기업은행은 2021. 3. 11.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청구금액 729,346,253원, 울산지방법원 2021카단11357)하였다.
-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2021. 4. 1. 강제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D)을, H은 2021. 4. 19. 임의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I)을 각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4) J 유한회사는 2021. 4. 20.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청구금액 4억 1,500만원, 대구지방법원 2021카단32009)하였다.

바.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는 2021. 9. 17. 이 법원(2021하단101007)에 파산을 신청하여 2021. 12. 21.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배당표의 작성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22. 6. 8.자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원리금 100,305,479원(배당비율 100%, 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2) 갑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21. 4. 8. 현재 3억 6,088만원이었던 사실,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시가 합계 600만원 가량의 도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인 사실, 반면 채무자의 채무는 당시 약 15억원에 근접할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① 채무자는 E이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기 불과 9일전에 급하게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채무자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③ 반면, 채무자는 당시 14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④ 이에 따라 채무자는 스스로 2021. 9. 17. 파산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피고에게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서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행위는 고의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3) 원상회복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고 근저당권이 말소됨에 따라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의 대가인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나)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0. 8.부터 2020. 5. 11.까지 채무자에게 합계 9,250만원을 E 등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사실에, ① 피고가 채무자에게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대여할 정도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다는 채무자의 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게 되었다’고 주장함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신용상태가 아님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무자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최초 대여일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1년 가량 지체해 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별지

부 동 산 목 록

1. 경상남도 양산시 답 264㎡ 중 지분 104/264
2. 경상남도 양산시 답 1547㎡ 중 지분 636/1547

끝.

